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(의안번호 제204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 및 발의일자 : 2019, 10, 01.

배 상 길 의원 외 5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0. 1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19. 10. 16.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폐지이유

O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의회에 설치 운영하는 민의수렴 처리기구 인 군민사랑방이 군민의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의원 1명이 처리하기 어렵고, 중요 사안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민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여 군민사랑방 운영이 유명무실하여 폐 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입법예고 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19-26호

- 입법예고기간: 2019. 10. 4. ~ 10. 10.(6일)

- 의견반영 등 조치내용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폐지조례안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의회에 설치 운영하는 민의수렴처리기구로 고성군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하였으나.
- 군민의 요구 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의원 1명이 처리하기 어렵고, 중요 사안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여 운영의 실익이 없어 검토결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- 7. 토 론: 없음.
- 8. 심사결과

○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